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51549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1. 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111,993,885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23,98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3가단11281)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6. ‘원고에게, 1. E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140,619,666원 및 그 중 104,391,52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E 주식회사, C, D, F, G은 연대하여 263,966,933원 및 그 중 131,609,621원에 대하여 2001.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23. 4. 27. 기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액은 522,735,886원이다.

나. C, D 및 피고의 부친인 H은 합병 전 경북 칠곡군 I 대 407㎡, J 대 11㎡, K 대 30㎡, L 대 158㎡(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81. 10. 26. 사망하였다.

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C, D, 피고, M, N, O, P, Q은 2020. 12. 21. 상속재산인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와 위 R 대 17㎡ 중 10/11 지분 및 위 S 도로 86㎡ 중 4/11 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2. 30.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 D의 상속지분은 각 12/42였다.

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와 경북 칠곡군 T 대 54㎡가 2021. 1. 12. 합병되어 I 대 660㎡(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 D는 위 다.항 기재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바. U이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노유자시설(주간보호) 365.63㎡를

신축하여 2022. 8. 1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2022. 8. 29. V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97,000,000원, 채무자 U)가 경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경상북도 칠곡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C, D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 D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C, D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C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 당시 C, D가 무자력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C, D의 상속지분을 C, D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9863 판결 등 참조), 그 매매행위가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C, D와 피고의 관계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고,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나) 2023. 4. 27. 기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액이 522,735,88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노경화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2. 11. 기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C, D의 각 상속지분(12/42)의 시가는 각 111,993,885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23,987,770원(= 111,993,885원 + 111,993,885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중 C, D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각 111,993,8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223,98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류연중

별지